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 예산액은 증감없이 25억 7천 2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572	2,572	0	0%
시 세		2,572	2,572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93	1,493	0	0%
	임시적	1,079	1,079	0	0%

2. 세 출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11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54억 8천 3백만원 대비 36.9% 증액(57억9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6,408	15,483	21,192	4,784	5,709	29.2	36.9	
행정관리	소 계	16,408	15,483	21,192	4,784	5,709	29.2	36.9
	행정운영경비	172	172	172	-	-	-	-
	사업비	16,236	15,311	21,020	4,784	5,709	29.5	37.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 예산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	-	5,709	5,709	5,709	-	-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	-	4,730	4,730	4,730	-	-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사업	-	-	979	979	979	-	-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25억 7천 2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572	2,572	0	0%
시 세		2,572	2,572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93	1,493	0	0%
	임시적	1,079	1,079	0	0%

- 서울혁신기획관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3억 8천 9백만원,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은 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감액 조정 등 서울시의 재정 건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검토

-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과제(불평등, 기후변화, 돌봄 등)가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에 47억 3천만원,
 -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에 9억 7천 9백만원 등 총 2개의 사업에 57억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액 사유
		기정	추경		
	총 계	-	5,709	5,709	
세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	4,730	4,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랩 지원 예산을 편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53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4,000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200백만원) </div>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	-	979	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조성에 따른 편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269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500백만원) ◦ 시설비(210백만원) </div>

가.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1) 지원(신규)

- 동 사업은 지역단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장 및 확산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47억 3천만원(‘사무관리비’ 5억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730,000	(x-) 0	(x-) 4,730,000
사무관리비	(x-) 530,000	(x-) 0	(x-) 5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4,000,000	(x-) 0	(x-) 4,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x-) 200,000	(x-) 0	(x-) 200,000

1) ○ 시민랩(Lab) 개념

- 주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지역 기반의 모델이 된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 시민랩으로의 확산 과정



※ **리빙랩(Living Lab)**: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실험의 환경이 되는 생활 실험실

○ 시민랩 구성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불평등, 기후, 돌봄 등)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시민랩)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10,000천원
	-회의 수당 지급(자문회의) 150,000원*6명*5회	= 4,500천원

시민실험 모델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실현



	-회의수당 지급(선정, 심의회의) 150,000원*6명*5회	=	4,500천원
	-회의 물품 구입 100,000원*10회	=	1,000천원
	○시민랩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10,000,000원	=	10,000천원
	○시민랩 프로젝트 관리·운영·평가를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	500,000천원
	-미디어 제작 등 홍보 30,000,000원*3회	=	90,000천원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5,000,000원*20개	=	100,000천원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5,000,000원*2회	=	10,000천원
	-성과공유회 등 워크숍 개최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100,000,000원	=	100,000천원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 100,000,000원	=	100,000천원
	○보조사업 회계 컨설팅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추진단 운영(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컨설팅, 성과평가 등) ○ 지원사업 선정 등 자문, 심사회의 개최 등 ○ 보조금 정산 등을 위한 회계전문기관 선정·활용 ○ 보조사업 예산집행, 정산 등 회계 전반 컨설팅 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랩 사업 지원 200,000,000원*20개	=	4,000,000천원
	증감사유		
	○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적 주체 및 사례 발굴 ○ 확산 가능성이 높고, 성과 목표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이 가능한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 지역 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민·관협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공유인프라 조성 지원 등 10,000,000원*20개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유인프라 및 공유재 조성 지원 등		

-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식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 주체(20개)등을 발굴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씩을 교부하려는 것이며,
- 전반적인 사업 관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적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

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용역 계약)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설명하듯이 민간의 영역에서 동 사업을 위해 특화된 단체·기관이 없다는 점과
 - 민간의 영역에서 특화된 단체 등이 없는 상황임에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구상과 체계도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실험적인 사업의 집행을 용역 계약하려는 것은 사업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는바, 사업을 관리할 용역 기관 선정과 보조금을 교부할 단체를 동시에 선정한다고 해도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 필요한 사업일 경우 직접 수행을 통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1억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1억원),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1억원), “사전 수요조사 격의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실시”(1천만원) 등으로 5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무관리비 중 용역 업체 예산>

○시민랩 프로젝트 관리·운영·평가를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	500,000천원
-미디어 제작 등 홍보 30,000,000원*3회	=	90,000천원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5,000,000원*20개	=	100,000천원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5,000,000원*2회	=	10,000천원
-성과공유회 등 워크숍 개최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100,000,000원	=	100,000천원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 100,000,000원	=	100,000천원

- 특히, 사업마다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아카이빙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며,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사전에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SPI)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제거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구매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주된 사업(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예산편성전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등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기획 담당관
--------------	---	--------	------------------------------	---------------------------	----------

- 한편, 행정에서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 서울혁신기획관은 ‘선정단체의 소규모 공유 인프라 시설 공사 및 공유재 조성 지원’을 위해 단체별로 1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 특정되지 않은 사업 시행을 위해 획일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X 20개)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민간자본사업보조’ 로 형성된 재산의 경우, 관리의 주체가 보조금 수령 단체가 되어 관리 소홀, 사적 용도로 사용 등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소요액 편성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사회협약 사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예산 중복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신규)

- 동 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및 생태 문명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9억 7천 9백만원(‘사무관리비’ 2억6천9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 ‘시설비’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979,000	(x-) 0	(x-) 979,000
사무관리비	(x-) 269,000	(x-) 0	(x-) 269,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500,000	(x-) 0	(x-) 500,000
시설비	(x-) 210,000	(x-) 0	(x-) 21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인건비 156,000,000원 = 156,000천원 ○데모데이 포럼 등 행사개최

	30,000,000원	=	30,000천원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운영비 63,000,000원	=	63,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의체 운영, 거점 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먹거리 순환경제 거점 모델 공모사업 50,000,000원*10개팀	=	500,000천원
	증감사유		
	지역순환경제 관련 모델 사업 공모·지원		
시 설 비	○지역순환경제 거점 조성비(리모델링) 210,000,000원	=	210,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순환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공사비 및 설계비		

-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먹거리 분야”의 권역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거점 공간 운영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단체의 관리 등을 위해 용역으로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사업 내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권역별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여파로 안전한 먹거리, 1회용품 사용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파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우선 먹거리 분야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파크 재생동(1개층 663㎡) 활용, 거점 조성비(리모델링) : 210백만원(시설비) ○ 거점 운영 및 먹거리 분야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수요, 강점 등을 도출하여 |
|--|

시너지를 이끌어 낼 사업추진단 운영

- 해당 지역 자원조사·실태진단 및 기존 사업간의 융합·차별화 전략 도출
-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 협의체구성 : 서울시(관련 실·본부·국),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 전환활동 주체, 대학·연구소, 기술·데이터 기업 등
 - ▶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269백만원(사무관리비)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 구현 시범사업 공모·지원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자원순환 분야 솔루션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시 지원
 - ▶ 시범사업 지원비(10개팀× 50백만원) :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소요예산 : 9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증추경액	세부내역
계	979	
사무관리비	269	○ 인건비: 156백만원 ○ 행사비(데모데이, 포럼, 작거래장터 등): 30백만원 ○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 20백만원 ○ 운영비: 63백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 공모사업 지원: 500백만원 - 10개 팀 × 50백만원 = 500백만원
시설비	210	○ 공사비 : 200평 × 1백만원 = 200백만원 ○ 설계비 : 200백만원 × 5% = 1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 사업수행주체: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서울시(관련 실·본부·국),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 전환활동주체, 대학·연구소, 기술·데이터 기업 등
-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순환경제 중 먹거리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으로 생태친화적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
 - 해당 지역 자원조사·실태진단 및 기존 사업간의 융합·차별화 전략 도출
 -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사업 중복성 여부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참고자료 1 참조)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참고자료 2 참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례들이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이자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추상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동 조례들이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전환도시’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생태친화적 먹거리 분야 순환 경제를 구축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는 결국 민간단체 등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 우선, 동 사업 추진부서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서울시에는 식품정책과(시민건강국), 도시농업과(경제일자리기획관), 사회적 경제담당관(노동민생정책관) 등이 이미 존재하며,
 - 특히 식품정책과는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먹거리 포털 구축 및 운영, 먹거리전략 2030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 추진, 지속가능 먹거리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환도시담당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용역 계약)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용역 업체 예산>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인건비 156,000,000원	=	156,000천원
	○데모데이 포럼 등 행사개최 30,000,000원	=	30,000천원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운영비 63,000,000원	=	63,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의체 운영, 거점 운영비 등		

- 앞서 언급한 사업과 유사한 문제인 집행시기의 부족, 구체적인 계획 미흡 등 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성 용역 여부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넷째, 권역별 거점의 시범공간으로 서울혁신 파크내의 유희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공유 주방 등을 조성하려고 하나,
 - 4~5개월의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한지 여부와 동 시설의 조성 이후 용역 업체 계약 만료 및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민간의 영역²⁾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합하여 유통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생협, 두레생협 등

- 동 사업의 수혜자가 선정된 민간단체의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소수 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바, 동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전체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임에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용역 수행 등 비교적 수월하게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현상이 어렵다는 이유 및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수요와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는 소수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혈세를 부담한 다수의 시민들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이라도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퇴색된 공익사업으로의 변질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민간의 자생력과 역량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최근 언론보도³⁾에 따르면, 민간 시민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3) 경상일보 2020.6.8. “시민단체, 정치단체, 이익집단”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99>

이데일리 2020.6.10.

[기부금 투명하게]③ "회계 무지한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도 극소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5800408&mediaCodeNo=257&OutLnkChk=Y>

기사가 많고(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협찬에 의존, 정치단체·이익집단화 한 시민 단체, 명칭에서 ‘시민’ 떼는 것이 마땅해,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보조금 수령 등으로 관변단체화 할 우려, 세금에 기생해 제 이익 챙기는 건 아닌지 그 말과 행동을 깊이 의심하고 따져봐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⁴⁾ 이라는 점과 아울러,

-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불명확한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57억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 한명 한명에 대한 사려깊은 고민과 검토가 부족한 급조된 사업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사업의 타당성, 시기 적정성 및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불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민간자본보조 형식의 사업비 지급 축소 등 전향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일보 2020.6.9.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 사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853>

4) 연합뉴스 2020.6.8.

문대통령, 시민단체·음해세력에 동시 경고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25400001?input=1195m>

다. 기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

① 민간위탁기관의 국외여비 편성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민간위탁기관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명	기관명	편성액	집행액 (5.31. 기준)	추경 증감액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12,000	0	-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4, 2017.1.5>

- 1."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란 에너지 사용, 소비 및 순환의 전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탄소의 직접배출 억제와 이미 배출된 탄소의 흡수원 확대를 통해 대기질의 청정화를 구현하며,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위한 시민 실천문화 기반이 튼튼하게 자리잡은 도시를 말한다.
- 4."녹색성장 도시"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장 조성과 일자리 만들기 등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체계와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 5."기후변화 고도(高度)적응 도시"란 폭염, 열대야, 폭우 등 이상 기온과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기상재해 및 병원성 매개체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 6."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7."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8."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9."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10."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1."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2."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

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14.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8.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반영한 국가정책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지역사회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기여한다.
-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전략 및 국가 5개년 계획이 수립·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로의 전환, 녹색성장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자치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 체계

제10조 삭제 <2013.10.4>

제11조 삭제 <2013.10.4>

제12조 삭제 <2013.10.4>

제13조 삭제 <2013.10.4>

제14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설·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도로 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광다이오드(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4.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오염도 저감 정책 추진
6.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8. 자동차 저공해 사업 지원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9.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10.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행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장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

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지방소비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기술 육성) 시장은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 1. 친환경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
- 2. 시의 도시특성과 조화되어 개발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 3. 시의 연구개발, 정보기술 등 우수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 4.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취약집단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술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 3. 녹색기술 관련 산·학·연·관 협력이 활성화되는 연구 도시 구현
-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제21조(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 시장은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를 시민에게 확대·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소비 시장 확대) ① 시장은 녹색시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기업·가정부문의 저탄소 경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분위기 및 여건 조성으로 녹색소비 생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판매환경·판매제품·판매방법의 녹색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탄소 중립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센서 조명 설치, 친환경 사무기기 구매, 탄소성적 표시 제품 구매 등 녹색사무실 장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4조(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기후변화대응 협력망 구축)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시민들의 기후 적응능력 향상) 시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종합 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재 개발·보급, 대상별 특화된 교육·훈련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① 시장은 기후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기준 정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 열섬 완화 등을 위하여 도심녹지를 확충하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7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8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예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평가담당관), 02-2133-69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행정계획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 문화·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 ③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 가. 10명 이하
- 나. 운영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 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장과 간사는 호선

-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민관협력의 증진)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 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